

엘림홀 대관규약

제정 2015년 7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서울연극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동송교회(이하 '교회'라 한다)가 공동 운영하는 엘림홀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대여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이를 상호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연장 운영과 올바른 공연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대관 정의)

1. 대관이라 함은 공연장을 대관한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공연', '연습', '촬영',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의 범위는 공연장 내의 공연을 위한 기본시설, 부대설비의 사용을 포함한다.

제3조 (대관의 종류)

대관의 종류는 사용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연 대관 : 공연장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를 대관하여 실제 공연을 위한 대관
2. 준비 대관 : 공연 전 무대 설치 및 리허설을 위한 대관
3. 철수 대관 : 공연 후 사용 전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대관
4. 촬영 대관 : 방송, CF, 영화 촬영을 위한 대관
5. 행사 대관 : 단체나 모임의 행사를 위한 대관
6. 연습 대관 :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또는 독립적 사용을 위한 대관

제2장 대관 신청 및 승인

제1조 (대관 신청 공고)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 공고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원칙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약에 따른다.
2. 위원회는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 등 공연장 운영 및 대관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실행한다.

제2조 (대관 신청)

대관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관신청서(서식 제1호)', '공연계획서(서식 제2호)', '저작재산권 사용동의서(별지 제1호)', 사업자등록증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조 (대관 신청 제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작품 및 단체의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대관이 승인 되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반기독교적 성격을 띤 작품 및 단체
2.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한 작품 및 단체
3.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작품 및 단체
4. 위원회가 명시하고 있는 동아리 및 아마추어 작품 및 단체
5. 체제 전복적이고 국가에 반하는 작품 및 단체
6. 계약 체결 후 대관 취소 또는 작품 변경을 1회 이상 한 단체
7. 공연의 내용 및 수준이 엘리트층이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작품 및 단체
8. 협회의 회원이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격정지단체

제3조 (대관 승인)

1. 대관신청 마감 후 위원회는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2. 위원회는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관일수나 내용을 신청인과 협의 및 조정할 수 있다.
3. 대관승인 기준은 공연작품의 내용과 단체수준, 신청인의 과거 대관 사용 실태 및 차기년도 공연장 운영계획에 따라 정한다.
4. 대관자는 '대관승인서(서식 제3호)'에 명시된 일자까지 대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5. 공연에 필요한 부대설비 사용은 대관계약 후 공연 스태프 회의 시 공연장 담당자(이하 '담당자'라고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6. 대관자는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준비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대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대관자에게 있으며,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장 대관료

제1조 (대관료 산정)

위원회는 매년 공연장 유지 및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대관료를 정한다.

제2조 (대관 계약금 및 잔금 납부)

1. 대관자는 대관계약 체결 후 계약금으로 대관료의 30%를 1주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공연 1개월 전까지 나머지 잔금을 위원회가 지정한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단, 장기대관의 경우 계약금 비율이 증가될 수 있다.
2. 부대설비 사용료는 공연 종료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부대설비의 추가 신청은 불가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대관 승인 후 부대설비 사용료가 추가 발생한 경우 공연 종료 후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3. 대관일정 변경 및 연장공연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되는 대관료의 경우 해당 공연 시작 한 달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4. 정해진 대관 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대관료는 기본 대관료의 100%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5. 위원회가 기획한 공연의 경우, 대관료 산정 및 납부 방식은 별도 협의에 따른다.

제3조 (대관료 반환)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 반환)
2. 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100% 반환)
3. 부대설비 신청 후 사용 일주일 전 취소한 경우 (100% 반환)

제4장 대관 사용 및 관리 준수 사항

제1조 (사용시간)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추가 시간이 발생할 경우 대관자는 위원회에 미리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연준비 기간일 경우 대관 시간은 10:00부터 22:00까지 한다.
2. 평일 공연일 경우 대관 시간은 16:00부터 22:00까지 한다.
3. 주말 및 공휴일 공연이 1회일 경우 12:00부터 18:00까지 또는 16:00부터 22:00까지 한다.
4. 주말 및 공휴일 공연이 2회일 경우 12:00부터 22:00까지 한다.
5. 특별 공연 등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해야 한다.

제2조의 (대관자의 안전관리)

1. 대관자는 대관 1개월 전까지 '재해대처 계획서(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대관자는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공연장비 반입은 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시간과 절차를 정하여 반입하며, 공연장비 외 화환 등의 공연장내 반입은 금지한다. 공연 종료 후 시설 철거 시 발생하는 환경 정리 비용은 대관자(보증금)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다.

5. 공연과 관계되는 판촉, 사인회, 리셉션은 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6. 상기 각 호를 위반한 대관자에 대하여 위원회는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조 (공연진행 협의)

1. 대관자는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하여 공연개시 최소 3주일 전에 담당자와 관련 스태프가 스태프 회의를 갖는다.
2. 스태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관자는 작업 2일전까지 담당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3. 대관자는 담당자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 사항에 응해야 한다.

제4조 (홍보물 협의)

1.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관자는 위원회가 지정한 공연장 내외벽면에만 홍보물을 부착해야 한다.
3. 홍보물의 부착기간은 대관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하되,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홍보물일 경우 별도의 기간 내에 부착 가능하다.
4. 위원회는 대관계약 후 공연시작 30일전까지 확정된 공연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방송 중계 협의)

위원회에서 하는 공연의 방송 녹음 또는 녹화의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관람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 좌석의 판매를 유보할 수 있다. 대관자는 이와 같은 위원회의 판단 및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입장제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자에게 관람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단, 공연의 성격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위원회의 승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제5장 변경 금지 및 계약 해지

제1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단, 계약체결 후 주최, 주관, 후원 등 불가피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대관 일정 변경 금지)

1. 대관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다른 공연과 상치되지 않고 위원회가 그 사유를 인정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2. 대관계약 후 대관 기간 중 발생하는 공연대관 취소 분의 기납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3조 (공연 내용의 임의 변경 금지)

대관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공연물 자체를 변경하여 공연할 수 없다. 단, 대관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 변경 내용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대관 계약 해지 및 승인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2. 대관자가 본 규약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
3. 대관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위원회가 정한 입장권 규약을 위반했을 때

제6장 입장권의 발행, 관리

제1조 (입장권의 발행)

1. 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은 엘림홀 좌석수와 공연 일정을 고려하여 협회가 발행한다.
2. 입장권 및 교환권은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발행한다.
3. 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 발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전적으로 협회가 책임을 진다.
4. 국가 및 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 등의 입장권 발행은 생략할 수 있다.

제2조 (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 관리)

1. 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은 협회가 전담하여 발행한다.
2. 대관자는 협회에게 1인 이상의 담당자를 지원한다.
3. 협회는 엘림홀 좌석수와 공연 일정을 고려하여 등급별 좌석 배분, 할인 여부 및 할인율 책정,

초대권 사용에 있어 대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대관자는 위원회가 지정한 대학로티켓닷컴에 회당 비지정석 10석 이상을 위탁 판매한다.
5. 대관자는 공연 회당 입장권 판매수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조 (회원제 인정 및 유보석)

1. 대관자는 위원회의 회원에게 할인 판매하며, 할인율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위원회는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관자와 협의하여 회당 최소 4석 이상의 좌석을 유보할 수 있다.

제4조(입장권의 수익금 분배)

1. 대관자는 대관 종료 후 회당 입장권의 판매수와 판매금을 정산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입장권 판매로 인한 수익금은 대관자 70%, 위원회 30%로 분배한다.
3. 대관자는 입장권 판매 정산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축소하여서는 안 된다. 허위로 보고할 경우 위원회는 대관자의 입장권 판매금을 몰수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장 대표시스템 사용

제1조 (대표시스템 사용)

위원회가 추후 고유의 대표시스템 구축한 이후 대관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용해야 한다.

제2조 (입장권 판매대행-고유 대표 시스템 구축된 이후)

1. 대관자는 입장권 등급별 총 수량의 50% 이상을 열림홀 대표운영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해야 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카드사, 전자상거래, 판매대행)는 정해진 통상적인 수수료율을 정하기로 한다.
2. 위원회의 회원에 한해 입장권 판매 시 할인우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약은 2015년도 9월 이후 공연을 위한 대관계약부터 적용되며 매년 위원회의 대관 목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규약의 효력)

1. 본 규약은 계약 당사자 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본 규약의 위반은 대관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

2. 본 규약을 위반할 시 대관자는 향후 2년간 협회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조 (손해배상)

1. 위원회가 대관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시켰을 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대관자는 대관 사용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및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3.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위원회의 지시를 이행하였거나 사전 협의한 후 무대장치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회와 책임한계를 협의 결정한다.

제4조 (관할법원)

이 규약에 따른 분쟁은 위원회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서울연극협회 회장 박 장 렬
동송교회 당회장 서 정 오